

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

구 분	현 재	이전 후
위 치	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, 11층 01호(논현동, 대동타워)	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, 새마을운동중앙회빌딩 10층
이전일자 및 그 사유	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본점 위치 변경 (2024.6.19)	

2.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

■ 첨부서류

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(변경등기 절차 진행 중으로 추가 제출 예정)